



CJ대한통운 중부사업본부 · 글로벌물류인력양성사업단

산학협력 협약서



CJ대한통운 중부사업본부 와 군산대학교 물류학과 글로벌물류인력양성사업단(이하 “사업단”라 한다)는 상호간 산학협력 지원활동이 상호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CJ대한통운 중부사업본부과 사업단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제1조 (목적) 이 협약은 양 기관의 산학협력관계 증진을 통하여 양 기관의 상호 발전과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협력분야) 이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분야는 다음 각 호로 한다.

1. 기술·정보의 상호교류와 협력
2. 산학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(산학협동 프로그램 개발)
3. 연계교육과정, 인턴십 및 현장실습 시행 등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양 기관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

제3조 (인력교류) 양 기관은 상대 기관의 동의를 거쳐 소속 인력(학생 포함)을 파견, 현장실습 및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양 기관은 파견, 현장 실습 및 위탁교육 중인 인력에 대하여 상호 호혜적인 예우를 한다.

제4조 (연구장비 및 시설의 공동 활용) 양 기관은 상대기관의 동의를 거쳐 장비 및 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 있으며,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내부 처리기준 또는 사전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.

제5조 (정보교환) 양 기관은 학술회의, 세미나, 워크숍 등을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기술 및 정책정보와 관련된 제반자료를 상호 교환·활용하며 상대 기관의 자문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.

제6조 (공동연구 등) ① 양 기관은 상호 별도협약에 의하여 공동연구 및 상대기관 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

② 공동연구로 발생하는 연구결과물(산업재산권, 지적재산권, 보고서, 시작품 등)은 양 기관의 합의를 거쳐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한다.

제7조 (상호지원) 양 기관은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소속 직원 및 학생들이 운영프로그램 및 시설물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으며, 기타 상호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별도로 협의한다.

제8조 (기밀유지) 양 기관은 상호연구 및 교류를 통해 인지된 제반 기밀사항은 양 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.

제9조 (신의 · 성실) 양 기관은 본 협약의 각 조항에 대하여 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.

제10조 (효력의 발생 및 유지) 본 협약은 양 기관이 공동 노력하여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그 기간은 2년으로 한다. 또한,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통보가 없는 한 1년 단위별로 자동연장 하는 것으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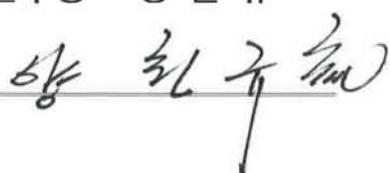
제11조 (기타)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.

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 · 서명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5년 8월 11일

CJ대한통운 중부사업본부

본부장 양 천 규



군산대학교 물류학과
글로벌물류인력양성사업단
단장 고 현 정

